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6월 27일(목) 9시 30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부 총괄기획과 안성일 과장(02-2110-4535), 김성철 사무관(02-2110-4542)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02-2110-4511), 임 택 사무관(02-2110-4514)
FTA 이행과 박종한 과장(02-2110-4801), 정지선 사무관(02-2110-4592)
기재부 통상정책과 이승원 과장(044-215-7670), 이혜림 사무관(044-215-7676)
외교부 양자경제진흥과 김요섭 과장(02-2110-7667), 이예현 서기관(02-2100-7671)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안용덕 과장(044-201-1711), 최민지 사무관(044-201-1719)
해수부 수산정책과 최완현 과장(044-200-5420), 서민정 사무관(044-200-5427)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안병옥 과장(042-481-3201), 백형민 사무관(042-481-3202)
중기청 해외시장과 이정화 과장(042-481-4391), 홍경의 사무관(042-481-4470)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으로 경제의 활력을 찾는다

- 6.27(목),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논의 -

□ 2000년대 초반까지 FTA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13.6월 현재 **46개국과의 9개 FTA를 발효한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

○ 그 간의 범정부적인 FTA 활용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

◇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FTA 활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FTA 활용현장의 애로청취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

1. **수요자 맞춤형 원스탑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 합니다.**
2. **FTA 활용단계별 및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합니다.**
4. **기존 원산지 관리 지원 이외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본격화되는 사후검증에 대해 철저히 준비·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라 FTA 활용과 협상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 수요자 맞춤형 원스탑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 합니다.

(1) FTA 통합 콜센터(1380)를 통해 원스탑 애로해소를 지원합니다.

○ FTA 콜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전국 어디서나 **1380을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원스탑으로 해결**

* 전화번호 키패드상에 '?'를 형상화하는 1380번호를 부여하고, FTA활용 관련 전문상담을 시행하는 콜센터를 FTA 무역종합지원 센터 內에 설치('13.6.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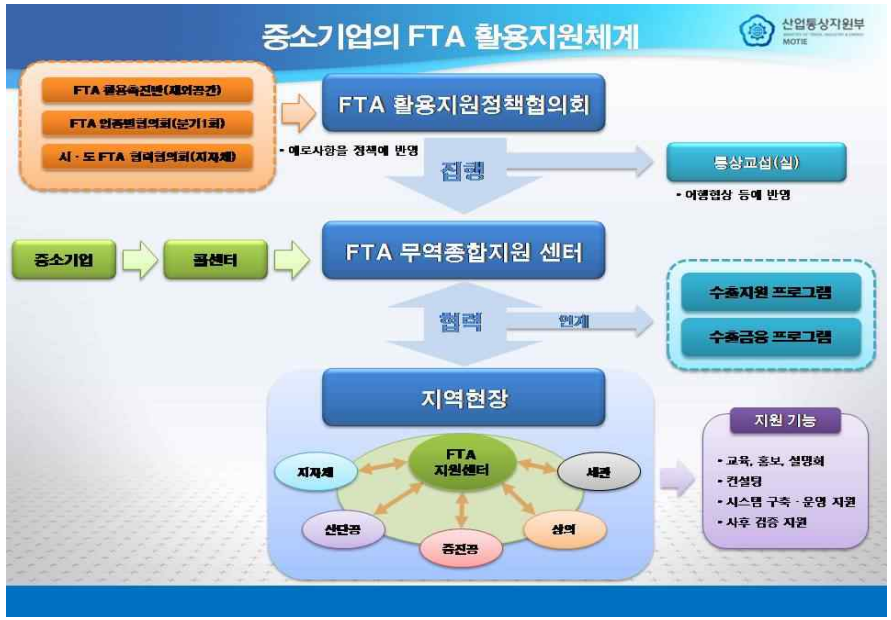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가** 기업현장을 방문해 FTA 활용애로를 직접 해결

(2) FTA 활용지원 현장 지원역량 및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 FTA 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지역지원센터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강화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

* 「지역별 FTA 활용촉진 협의회」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컨설팅·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 하는 한편, 상호연계도 강화



2. FTA 활용단계별 및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1) FTA 활용 단계(초보·준비·실행단계)별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유형화하여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초보단계) CEO 인식제고 및 기업성공사례 확산, 협력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제3자 확인제도 도입 등

○ (준비단계) 품목분류 애로해소, 실무인력 교육 강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편의성 향상, 업종별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

○ (실행단계) 해외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현지 통관 애로 해소, 사후검증 지원센터를 통한 사후검증 지원 등

(2) 업종별 전문가 육성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 고용부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업종별 원산지 특화 교육을 확대하고, 업종별 무역전문가 육성·현장배치

○ 컨설턴트 전문화 교육 시행, 업종별 컨설턴트 풀 공개를 통한 기업의 선택권 제고,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성과평가체계 개편

○ 업종별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석유화학, 농수산식품분야 우선 추진), 업종별 사후검증 대응메뉴얼 제작·보급



3.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합니다.

(1) 협력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세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수출 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 홍보를 강화해 기업들이 동제도를 활용토록 유도

* (부가세 세액공제) 30만원(원산지 확인서 건당 1만원)

○ FTA 활용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원산지 관리지원 뿐만아니라 2~3차 협력사도 지원토록 유도

* 「FTA활용 동반성장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신규, 13년말)

○ 업종별 협·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확인 우수협력기업을 지정**하여 민간자율의 원산지관리 협력체계 구축 유도

(2)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 요구를 방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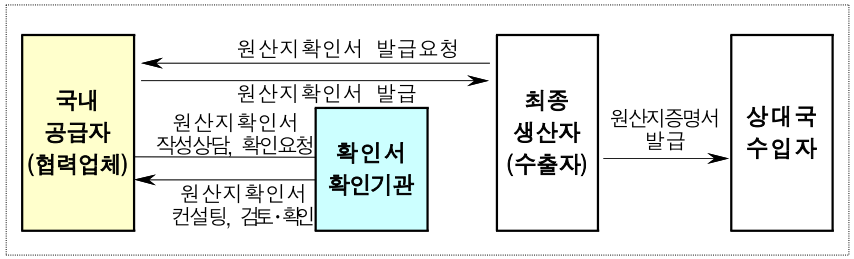
○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3자 확인제도 시범도입**

- 우선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13.下)

*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인증기관에서 원산지 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

- 향후 FTA 제3자 확인제도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시범사업 대상 업종·지역 확대, 법제도화 방안 등) 검토

<참고 : 제3자 확인제도 개념도>



4. 기존 원산지 관리 지원이외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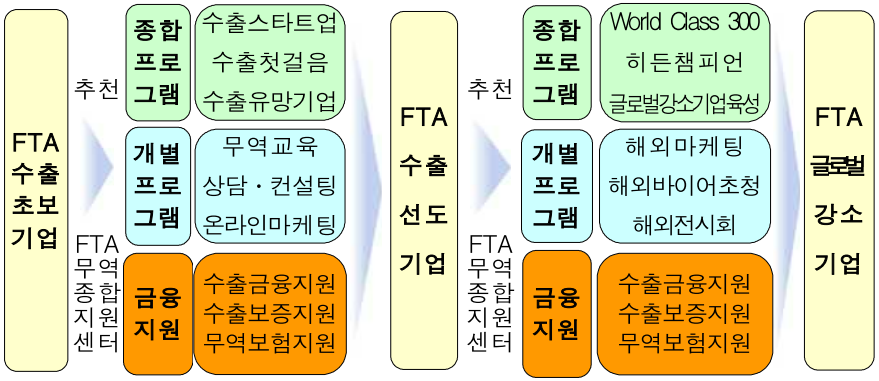
(1)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강화하여 성과창출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부, KOTRA) FTA체결국 대상 무역사절단 99회(미국 14회, EU 23회, 기타 62회),해외전시회 총 58회(미국 20회, EU 20회, 기타 18회) 개최

* (중기청) FTA 전략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12년 87회 → '13년 100회)

(2) 우수 FTA 활용기업을 발굴하여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프로그램에 연계합니다.

【FTA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



5. 본격화되는 사후검증에 대해 철저히 준비·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사후검증 대응 업종별 메뉴얼 제작·보급, 기관합동 지역순회 설명회, 자가검증툴 보급, 고위험 산업군 사전진단, 실무교육 등을 통해 사전준비 지원

(2) 사후검증진행기업은 FTA사후검증지원센터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사후검증 진행기업에 대해서는 **"FTA사후검증지원센터**(FTA무역종합지원센터內, '13. 5월 개소)를 중심으로 사후검증 대응 신속 지원

6.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라 FTA 활용과 협상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 업종별 FTA 활용애로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업종별 협·단체 의견수렴, 온라인 기업애로 조사, 시·도FTA 정책협의회, 시·도합동 FTA 관련기관 워크샵, FTA 기업지원 협의회, FTA 해외활용지원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

* 「FTA 업종별 협의회(분기1회)」를 통해 국내 업종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접수 → 통상교섭실(이행협의 및 협상에 반영)

* FTA 해외활용지원반(현지기업 간담회 보고서 작성, 반기1회) →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FTA 활용애로 취합) → 통상교섭실(이행협의 및 협상에 반영)

(2) 기업의 애로사항은 산업부(교섭실)에서 이행협의 또는 신규협상에 신속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FTA 활용 주요애로사항 및 조치 계획

○ (공통) 국내 또는 해외 현지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FTA 이행협의 등에 반영되도록 조치

* 기존 품목분류 코드(HS2002 또는 HS 2007)로 작성된 협정문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품목분류코드를 최신버전(HS 2012)으로 개정하고, 이행협의를 통해 품목분류코드 변환표(HS 코드 변환표)를 교환

○ (대 개도국 FTA) 양허수준 개선(베트남, 인니, 인도) 및 원산지 규정 및 세관행정 제도·관행 개선

* 원산지증명서상 가격기재 의무, 발급권자 서명확인 제도 등 개정추진

○ (대 선진국 FTA) 원할한 EU지역 수출을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및 최근 발효한 미국의 규정 및 관세행정 정보 제공, 인력 교류방안 구체화 협의 등

* 엄격한 원산지 판정기준 개선, 사후검증 요청창구 및 특혜관세 소급양식 일원화 등

□ 2013.6.27(목) 오전 9시 30분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 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주재)**」에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하였음

□ 금번 대책은 그 간의 범정부적인 FTA 활용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 **대통령님**께서도 기업이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만큼 정부가 수요자 입장에서 FTA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지시**

○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지원 기관과 **FTA 활용현황 및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FTA 활용지원 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FTA 활용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

□ 산업부는 "동 대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한 수출을 확대**하고, 현재의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는 디딤돌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 향후 **FTA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조달시장 진출, FTA를 활용한 서비스업 진출 및 국내 서비스시장 선진화, FTA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과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음

[참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상세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성일 총괄기획과장(☎ 02-2110-4535) 또는 김성철 사무관(☎ 02-2110-45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상세본)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2	공개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13. 6. 2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FTA 활용 실태 3

Ⅲ.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6

1.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지원 시스템 가동 7

(1) FTA 통합콜센터 설치·운영 7

(2) FTA 활용지원 현장지원체계 효율화 9

(3) FTA 활용촉진 콘트롤 타워를 통한 협력 9

(4) FTA 활용과 협상간 환류체계 가동 10

2.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애로 해소 11

(1) 초보단계 기업 11

(2) 준비단계 기업 13

(3) 실행단계 기업 19

Ⅳ. 향후 추진계획 24

Ⅰ 추진배경

1. 추진 배경

□ 2000년대 초반까지 FTA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13.6월 현재 **46개국과의 9개 FTA를 발효한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

○ 2000년대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적극 추진**

○ 그 결과 세계경제의 약 57.6%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를 맺었고, **우리나라 총교역의 34.8%를 FTA발효국과 교역**

○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중국, 일본 등과의 FTA를 발효할 경우 **전체 교역의 70% 이상을 FTA 발효국과 교역하게될 전망**

* 전세계의 지역무역협정(RTA) 교역 비중은 전세계 교역의 약 55% 수준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발효(9건,46개국)	타결(1건)	협상중(11건)	협상재개 여건조성(3건)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5건)
칠레('04), 싱가포르('06), EFTA('06), **ASEAN**('07), 인도('10), **EU**('11), 페루('11), **미국**('12) 터키('13)	콜롬비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GCC, 일본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몽골

□ **FTA를 활용한 교역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소위 '스파케티 볼 효과(Spagetti bowl effect)'가 발생**

* 스파게티볼(Spagetti bowl effect): 각 협정마다 상이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이 스파게티 가닥처럼 복잡하게 얽혀 FTA 활용을 저해하는 효과

○ 특히, **중소기업들은 FTA 마다 다른 복잡한 원산지 관리,**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등을 지속 호소

☞ 스파게티볼 효과를 최소화하고 우리기업의 FTA활용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대책마련 필요**

2. 추진 경과

□ **정부**는 **그간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을 지속

○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FTA 효과 극대화방안**('12.3월)」을 **마련**하여, **기업의 FTA 활용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효과 가시화**를 위해 **노력**

* 기업활용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대 등 4대 중점과제 마련

□ 그 간의 범정부적인 FTA 활용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

○ **대통령님**께서도 기업이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만큼 정부가 수요자 입장에서 FTA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FTA에도 불구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정보와 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에 애로가 있음('13.3.20일, 상공인의날)

◇ 과거에도 FTA 지원대책이 있었을 텐데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필요('13.4.22일, 수석비서관 회의)

☞ 이에 따라 **금번대책에서는 기업의 FTA 활용 애로 해소에 집중**

□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지원 기관과 **FTA 활용현황 및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T/F 팀장으로 10여차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회의 개최

○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FTA 활용지원 현장·업종별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FTA 활용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

* 석유자동차, 기계, 디스플레이, 섬유, 전자정보 등 업종별 협·단체 의견수렴, 기업(40여개) 현장 방문 간담회 및 중소기업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

☞ 기업규모별·업종별·활용단계별·FTA 대상국가별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Ⅱ FTA 활용실태

1. 기업 규모별 FTA 활용현황

□ 대기업은 FTA활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활용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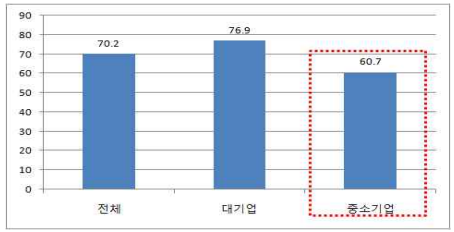
* 한미 FTA 수출 활용률(%, '13.3.14일):(전체) 70.2 (대기업)76.9 》(중소기업)60.7

* 한EU FTA 수출 활용률(%, '12년기준):(전체) 81.4 (대기업)85.1 》(중소기업)73.5

○ 중소수출기업은 여전히 **FTA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등을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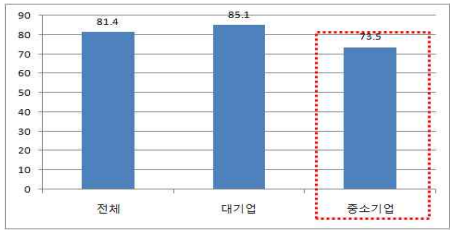
*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40.5%),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자금 부족(34.6%), 해외진출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32.0%) 등 (대한상의'13.3월)

<한·미 FTA 수출 활용률('13.3.14일기준)>



*자료원: 관세청

<한·EU FTA 수출 활용률('12년 기준)>



*자료원: 관세청

☞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FTA 활용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강화 필요

2.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현황

□ 직접수출기업은 FTA를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으나, **협력기업은 활용유인이 낮아 원산지 관리가 미흡**

* FTA 활용빈도(%, 업체수기준, 설문조사결과): 수출기업(61.8), 협력기업(38.9)

☞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 지원을 통해 FTA 활용을 활성화하고, 협력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애로 사항

1 협력기업

□ **(인식부족)** 직접 수출기업이 아닌 **협력기업의 경우 원산지 관리 및 증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 **(비용대비 혜택부족)**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 협력업체의 경우 FTA로 인한 **혜택은 없고 원산지 관리에 따른 비용만 부담**

□ **(기업내 정보유출 우려)** 원산지 증명서, 확인서 등을 작성시 재료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등을 통한 **회사 영업비밀 유출** 우려

☞ 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CEO 교육을 확대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2 수출 중소기업

□ **(품목분류의 어려움)** 원산지 관리를 위한 기본단계인 **품목분류 단계에서도 이행상의 문제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애로 발생**

□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 특성상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실무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에 차질** 발생

□ **(원산지 증명관리의 어려움) FTA마다 품목분류·원산지 결정기준·증명서식·증빙서류 관리 등이 다르고 복잡**

□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 해외시장 정보부족, 해외 네트워크 부족, 마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해외 수출시장 개척 곤란**

□ **(통관애로)** FTA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도 **상대국 세관이 통관을 지연**해 활용이 곤란하고 **문제발생시 해결도 어려움**

□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자율발급(한·미/한·EU FTA 등)에 따라 **사후검증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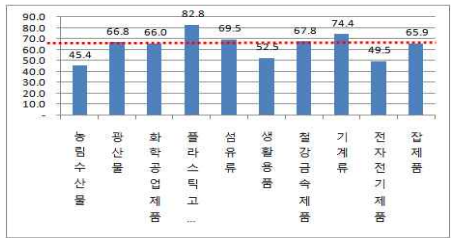
☞ 현행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

3. 업종별 FTA 활용현황

□ 플라스틱·고무, 기계류, 섬유, 화학공업제품의 활용률이 높은 반면, **농림수산물,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의 활용률이 낮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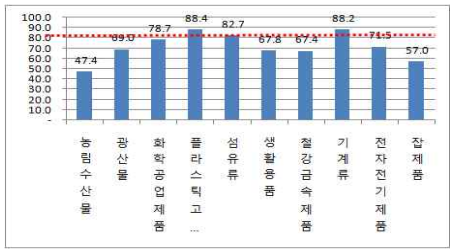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등 **영세기업이 다수인 업종**이거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

<한·미 FTA 수출 활용률('12년 기준)>



*자료원: 관세청

<한·EU FTA 수출 활용률('12년 기준)>



*자료원: 관세청

☞ 업종별 FTA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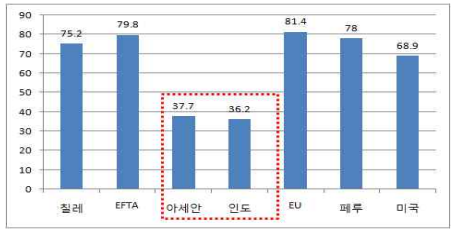
4. FTA별 활용현황

□ EU, 미국 등 선진국과는 높은수준의 수출활용률을 보이는 반면, **아세안,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활용률이 낮은편**

○ 활용저조 원인은 **낮은 개방수준, 상대국 세관행정의 낮은 투명성, FTA 특혜관세 혜택 부여시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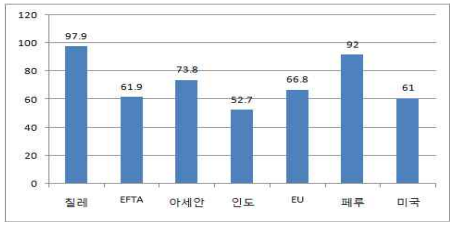
* 품목분류코드 체계 개편(例HS 2002→2012)에 따른 FTA 양허표 미제공, 원산지증명서상 가격기재 의무, 발급권자 서명확인 제도 등

<FTA별 수출 활용률('12년 기준)>



*자료원: 관세청

<FTA별 수입 활용률('12년 기준)>



*자료원: 관세청

☞ 이행협의, 통관당국간 MOU 등을 통해 상대국 세관행정을 투명화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자유화 등을 추진할 필요

Ⅲ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통한 글로벌 무역강국 도약

추진전략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가동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애로해소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가동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애로해소
원스탑 지원	• 전국대표 콜센터 설치 -"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1380)" -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관련 궁금증 해결	초보단계 • CEO 인식제고 및 기업 성공사례 확산 • 협력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유도
지원체계 효율화	• FTA 현장 지원체계 효율화 및 기관간 협력 강화 • 「FTA활용촉진협의회」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준비단계 • 원산지 품목분류 지원 강화 •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선
환류체계 강화	• FTA 활용과 이행협상간 환류체계 가동 - 이행·개선·신규 협상에 FTA 활용애로 사항 전달·반영	실행단계 • 전략품목 해외시장 개척지원 • 수출마케팅·금융프로그램 연계 • 사후검증 지원 강화 및 통관애로 해소

1.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FTA 활용촉진 시스템 가동

1 FTA 통합 콜센터 (FTA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설치·운영

□ **(1단계: 중소기업 FTA 활용애로 전화상담)** 중소기업이 전국 어디서나 1380*번호를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

○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사후검증 대응, FTA 활용방안 등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가 상담 시행**('13.6.24일 개소)

* 전화번호 키패드상에'?'를 형상화하는 1380번호를 부여하고, FTA활용 관련 전문상담을 시행하는 콜센터를 FTA 무역종합지원 센터 內에 설치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가** 기업현장을 방문해 FTA 활용애로를 직접 해결

< 현장밀착 상담 지원체계 >

① **(1차 응대, 상담원 접수)** 상시 11명의 상담원이 기업의 업종별, 원산지 관리단계별 애로를 접수(필요시 최대 19명까지 배치)

② **(2차 응대, 전문가 상담)** FTA 무역종합센터내 관세사 7명이 업종별·원산지 관리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제공

- 일부업종은 지역 FTA 센터 전문가를 활용하고, 종합지원센터 內의 업종별·원산지 관리단계별 전문상담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현재 7명 → '14년 14명)

< 업종별, 분야별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총 7명) >

분야 \ 업종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 계	섬 유	화 학	기 타
품목분류 및 관세율	A	B	C, C1	D, D1	E	F
원산지관리	A	B	C, C1	D, D1	E	F
통관절차	A	B	C, C1	D, D1	E	F
사후검증 등	G	G	G	G	G	G

* C1은 경남지역 센터(창원) 전문가, D1은 대구지역 센터 전문가

③ **(3차 응대, 기업 직접 방문)**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당해 지역의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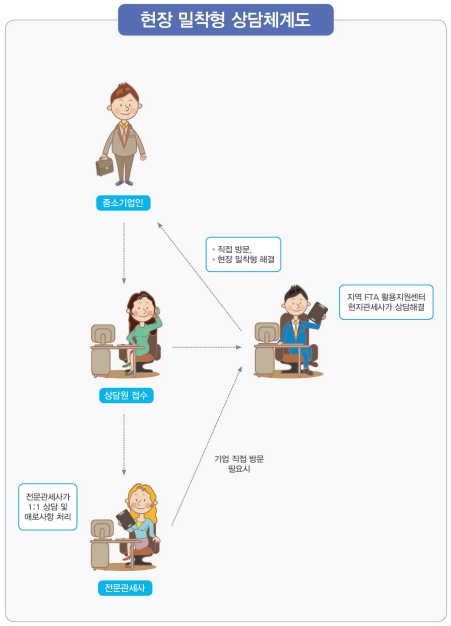
□ **(2단계: 온라인 상담체계 가동)** FTA 인터넷 기반 상담콜센터 '인터넷 FTA 1380'(www.fta1380.net)을 구축('13년 하반기)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인터넷상으로도 업종별·원산지 관리단계별로 애로를 직접문의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 실시간 상담 포함)

○ FTA관련 정부지원사업(교육, 컨설팅, 설명회,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신청, 신청결과 확인 등 지원사업 全단계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기관간 시스템 연계

* 현재는 정부지원사업이 추진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고·모집함에 따라 지원사업 전체를 파악·활용하기가 곤란

☞ 중소기업의 FTA 활용시 느끼는 애로를 Single Window(1380)를 통해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2 FTA 활용지원 현장 지원체계 효율화

□ **(기업현장 지원체계 강화) 기업애로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간 서비스 연계 등 협업기능을 강화

○ **(지원역량 강화)** 원산지 관리에서 수출단계까지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全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센터의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

○ **(협업기능 강화)** 중기청·관세청·산단공·업종별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역FTA활용지원센터(16개)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별 FTA 활용촉진 협의회」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컨설팅·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차별화 하는 한편, 상호연계도 강화

3 FTA 활용 촉진 콘트롤 타워를 통한 정책협력 강화

□ **(FTA 활용촉진 콘트롤 타워 운영) 유관기관간 칸막이 없는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애로를 적극 해소**

○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민·관 합동형태의 「FTA 활용촉진 협의회」구성·운영**('13.5월~)

* 산업부 1차관 주재, 기재부,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 및 무협,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FTA 활용관련 애로발굴 및 제도개선 지속

○ FTA 관련정책의 **정보공유, 조정 및 협력사업 발굴**, 산업계의 **FTA 관련 통상애로 해소 방안 등 협의**

4 FTA 활용과 협상간 환류체계 가동

□ **(활용과 통상간 연계 강화) FTA 활용애로 또는 현황을 평가**하여 FTA 이행협의시 또는 **신규협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강화**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 **국내 업종별 단체의 FTA 활용 애로 사항 및 현지 FTA 활용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필요사안은 **이행협의 등에 반영되도록 조치**

* 「FTA 업종별 협의회(분기1회)」를 통해 국내 업종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접수

* FTA 해외활용지원반(현지기업 간담회 보고서 작성, 반기1회)→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FTA 활용애로 취합)→ 통상교섭실(이행협의 및 협상에 반영)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조치 계획

◇ **(공통사항)** FTA 협정당시 양허표 상의 품목분류코드(구버전)가 현재 각국이 적용중인 품목분류코드(신버전)로 변환되지 않아 품목분류에 애로

○ 기존 품목분류 코드(HS2002 또는 HS 2007)로 작성된 협정문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품목분류코드를 최신버전(HS 2012)으로 개정하고, 이행협의를 통해 품목분류코드 변환표(HS 코드 변환표)를 교환

◇ **(對 개도국 FTA) ASEAN·인도와의 FTA 활용시 애로가 다수를 차지**

○ **인도**와는 FTA 양허 개선을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며, ASEAN과도 향후 추가자유화 관련 협상을 추진할 예정

- ASEAN과는 **원산지 증명 인증 절차** 및 **원산지 증명서 양식(AK Form) 우선 개정을 추진('13.6월 국회 보고)**

○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인니, 베트남 등과는 개별 FTA협상을 통해 추가자유화 및 개선을 추진

◇ **(對 선진국 FTA)** 한·미 FTA의 엄격한 섬유 원산지 판정기준 개선, EU 사후검증 요청창구 단일화, EU 특혜관세 소급양식 일원화 등이 애로

○ 미국·EU 등 FTA이행협상시 의제화하여 가능한 사항은 개선

2.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애로 해소

1 초보단계 기업(협력기업)

◇ **CEO의 인식제고를 통해 FTA 활용 동기부여**

◇ **우수 협력기업(원산지 확인서 제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기업 정보유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3자 확인제도 도입**

1 FTA 활용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

□ **(CEO 인식제고) CEO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이 컨설팅 신청시 우선 지원**

○ **기존 CEO정례모임**(생산성본부, 표준협회), **CEO자생모임**(산단공)시 CEO대상 FTA 활용관련 내용 추가

○ **CEO 교육과정**(FTA종합센터, 중기청)을 **신설**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컨설팅 지원시 우선 지원

【'13년 CEO대상 교육과정 운영계획】

CEO교육과정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산업단지(산단공) CEO자생모임	FTA무역종합센터	중기청
700명	900명	400명	500명

○ CEO의 FTA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 중소기업 CEO대상 「**FTA 알리미**」 **서비스 제공 확대**(FTA종합센터)

- 중소기업 CEO 맞춤형 「**FTA무역리포트**」 **제작·송부**(관세청)

□ **(FTA 비즈니스 모델 발굴·전파)** 기업의 FTA 활용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FTA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전파하여 활용의지를 제고**

○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관계부처 및 기관이 공동개최(산업부, 관세청, 중기청 등, 13년 하반기)**하고, 성공사례 제공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 컨설팅·사후검증 지원요청시 우선 지원, 컨설팅 자기부담금 완화, 수출지원 프로그램 연계 추천, 무역의날 정부포상 우대 등

* 한·미 FTA 활용 우수 중소기업 사례 'FTA로 DO DREAM' 발간(중기청,6월)

2 협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부담완화

◇ 직접 수출자가 아닌 **수출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 **(부가세 환급제도 홍보강화)** 원산지 확인서 발급시 공제되는 세제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동제도를 기업들이 활용토록 유도**

* (부가세 세액공제) 30만원(원산지 확인서 건당 1만원)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FTA 활용협력 유도)** 대기업에게 **1차 협력사에 대한 원산지 관리 지원을 권장**하고 **2·3차 협력사도 지원토록 유도**

○ 「**FTA활용 동반성장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신규, 13년말)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협력모델을 개발**

□ **(확인서 관리 우수협력사 지정)** 업종별 협·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확인 우수협력기업을 지정**하여 민간자율의 원산지관리 협력체계 구축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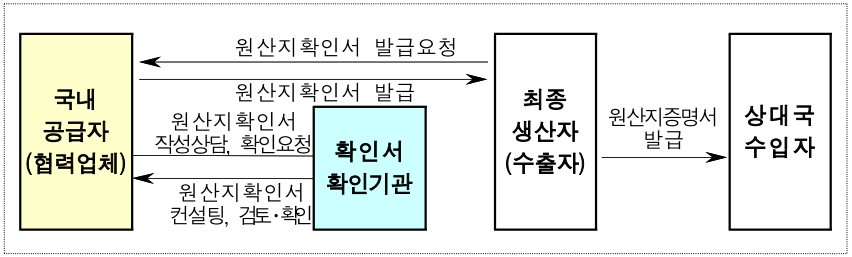
□ **(과도한 정보제공에 대한 부담완화)**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3자 확인제도 시범도입**

○ 우선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13.下)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확인기관에서 원산지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

○ 향후 FTA 제3자 확인제도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시범사업 대상 업종·지역 확대방안, 법제도화 방안 등) 검토

<참고 : 제3자 확인제도 개념도>



2 준비단계 기업

◇ 원산지 관리 기본단계인 품목분류 애로해소를 위해 **이행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정보를 최신화**하고, 품목분류판정 지원서비스 강화

◇ 기업의 FTA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

◇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업종별 시스템·기업내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연동 지원 등을 통해 편의성을 향상**

○ 전자표준 제정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류의 전자적 유통을 촉진**

◇ 업종별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컨설팅 체계도 효율화**

1 품목분류 애로 해소

□ **(업데이트된 품목분류 코드 교환)** HS 2002 및 HS 2007로 작성된 협정문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HS 2012로 개정하고, 이행협의를 통해 HS 코드 변환표를 교환하여 기업의 품목분류 혼란을 최소화(산업부, 기재부)

□ **(협정문상 사전심사 결정제도 활용 강화)** 수입국 세관당국을 통하여 **품목분류, 원산지 상품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Advance ruling) 결정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지원**

○ 동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우리 수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을 배포하고 제도 홍보**(산업부)

* 미국, EU, 페루, 인도, 칠레, 싱가폴과의 FTA에 advance ruling이 규정

* 세관당국(例: 美 CBP)은 사전심사 요청·접수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평균 30일 내에 회신

□ **(품목분류 판정기관 인력보강)**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품목분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품목분류 기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판정기간을 단축**(관세청, 안행부)

* 품목분류 민원 건수 : ('08년) 642→('12년) 6,191건, 관세평가분류원 현원(2과 22명)

2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 **(기업 실무인력 원산지 교육 확대) 재직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기관별 교육계획을 통합 공고**(신규)하여 교육 수요자의 편의 제고

* 실무인력 교육확대 : ('12년) 44,072명 → ('13년) 45,380명

【기관별 FTA활용 실무자 교육 실시 계획('13년)】

구분	FTA무역 종합센터	지역FTA 활용센터	대한 상의	중기청	관세청	원산지 정보원
교육인원	2,500명	10,000명	880명	8,000명	20,000	4,000명
기관별 특화 교육내용	업종·협력사별 맞춤교육 및 해외시장 개척	지방특화 산업연계 교육	원산지 증명발급 실무 특화	CEO, 수출모 기업·협력사 합동, 소그룹 및 1:1 등 현장 밀착형 교육	원산지 시스템 활용 및 관세행정 실무	원산지 관리사 자격시험

○ **(업종별 특화 교육 확대) 고용부** 재직자 훈련 및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종별 원산지 특화 교육 확대**

- 고용부 직업훈련제도를 활용한 **업종별 특화 재직자 특화교육** 실시 (산업부, 고용부)

산업부 지정 교육기관	산단공·업종단체
사업관리총괄,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운영, 교육시설운영 등	기업교육참여 협약체결, 업체모집, 업종별 특화커리큘럼 개발 등

-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업종별 교육을 확대**

* ('12년) 10회 605명 → ('13년) 15회 700명

- 업종별 협·단체 협조를 통해 **업종별 전문 강사 풀(Pool), 실무 메뉴얼, 심화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업종별 교육 실효성 제고 (신규, '13년 하반기)

□ **(전문인력 양성)** 원산지 관리사, FTA 전문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

○ **(원산지 관리사 공급확대)** 시험 응시 전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횟수**를 확대, 지방 응시자 편의제고를 위해 **지방교육 비중**과 **시험장소도 확대(서울→주요지방 광역도시)**

* 사전교육횟수 : ('10년) 10회→('11년) 30회→('12년) 65회→('13년 계획) 70회
* 자격시험 횟수 확대(2회→3회), 국가공인 자격증화 ('10~'12년 총 1,184명 배출)

○ **(FTA 전문 컨설턴트)** 무역 환경과 실무를 이해하는 **무역관련 은퇴 인력 등**을 업종·국가별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12년 80명 → '13년 120명)

○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중소기업의 **FTA활용전략과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컨설턴트, 강사 및 협상전문가 등 석사급 인재 양성(연 140명)

○ **(FTA 대학 강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 실무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내 FTA강좌 개설을 확대('13년 50개 강좌, 2,580명)

□ **(고용연계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고용연계형 FTA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문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산업부, 고용부)

○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 중소기업의 고용실정에 맞는 원산지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상업분야 **특성화고 또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14년 5개교 시범사업)

○ **(고용연계형 우수 모델 확대)** 인천지역 FTA활용센터에서 지자체, 세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 **지역맞춤형 취업연계 교육모델** 확산

* 지역대학생 대상 교육 후 지역기업 취업 지원('13년 100명) → 전국으로 확산

○ **(양성인력 인턴쉽)** 특성화고·전문대 교육, 대학FTA강좌 수료생에 대해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도 활용**하여 취업 연계 ('14년 신규)

* FTA 교육수료생 중 청년취업인턴 참여 희망조사→인턴희망자 및 FTA인력 구인기업 명단 고용부 송부→인턴참여 희망자 및 FTA 전문인력 수요기업알선(운영기관)

□ **(원산지 관리 인력채용 지원)** 중소기업이 관세사, 원산지 관리사 등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13.1월 시행)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채용시 고용창출지원금 지급(1인당 1,080만원)

3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확충 및 개선

□ **(원산지시스템 보급)** FTA KOREA(KT-NET), FTA-PASS(관세청) 등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속 확대** ('13.3월말 9,568개사 → '15년 2만개사)

○ 입력 데이터 작성법 등 시스템 사용 과정을 **실무자가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 및 방문 교육 실시**

* 전담팀 구성·운영, FTA 설명회,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

□ **(Excel 기반 FTA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기반 FTA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전국 상공회의소 교육장을 통한 교육 실시(상의, 신규)

* 대분분의 기업 EXCEL 또는 수기로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FTA 활용확대를 위해서는 EXCEL 기반의 프로그램 및 교육이 필요

□ **(업종별 특화 시스템 개발 및 기존시스템 고도화)**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업종별**로 **특화된 시스템 개발·보급**('13년 기획, '14.상 개발·보급)하고, 기존 원산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불편 해소

* (현행) 섬유 분야만 특화서비스 제공 → (개선) 석유화학, 농수산식품 추가

○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별도의 원산지관리가 필요한 **석유화학 업종과** 영세업체가 집중되어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수산식품 업종에 대해 우선 특화시스템 개발·보급**

* 농수산식품 FTA수출활용률('12년): 美 45.7%(전체68.9%), EU 47.4%(전체 81.4%)

□ **(ERP 연계지원)** 중소기업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연계를 위한 표준 모듈 개발*(3개),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ERP 연계모듈로 범용 ERP형, SAP형 및 ORACLE형 모듈 개발·보급(관세청)

** 총비용 50% 이내, 1000만원 한도로 200개 기업 지원('13년, 중기청)

***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플랫폼' 구축('13년 1,500개사)지원시 원산지증명 발급시스템(FTA-Pass, FTA-Korea)과의 연계기능 구현(중기청)

□ **(증명서류 유통기반)** 원산지 증명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을 위해 **표준전자문서 제정 및 유통망 구축**

* UN(KTNET), WCO(관세청)로 표준이 이원화되어 있는 전자문서가 상호 호환이 가능토록 표준전자문서를 제정(완료)하고 연계모듈을 개발·보급('13년 하반기)

4 FTA 활용지원 컨설팅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현장 맞춤형 찾아가는 컨설팅 확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활용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12년 2,329건 → '13년 3,000건 이상)하고 기관별 지원내용을 전문화·차별화

【기관별 컨설팅 사업계획(2013)】

구분	관세청	중소기업청 (중진공)	FTA무역종합 지원센터	지역FTA 활용센터
사업명 ('13예산)	중소기업 FTA컨설팅 (12.3억원)	FTA·수출 컨설팅 (8.8억원)	OK 컨설팅 (12억원)	밀착형 컨설팅 (15억원)
지원대상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 * 중견기업 포함	수출 5백만불이하 중소기업 * 중견기업은 FTA 컨설팅만 지원('13년~)	중소기업 Supply chain 합동	지역 중소기업
기관별 특화	FTA-PASS,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통관애로	수출컨설팅 FTA컨설팅 (ERP연계 포함)	FTA-KOREA, 업종별 협단체 연계 컨설팅 대·중소기업 공급망 컨설팅	지역 유관기관 (세관, 산단공 등) 합동컨설팅, 지역특화산업 컨설팅 (테크노파크)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하여 업종별 현장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Supply Chain) 합동 컨설팅 확대

○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 지역기업에 대한 **밀착컨설팅 지원 확대**

* 산단공, 중기중앙회, 중기조합,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하여 지역수요를 발굴하고 현장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세관-기업간 **1:1 전담관 지정, 산업별·규모별 컨설팅 확대**

* FTA 강소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FTA Small Giants 500 projcet):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찾아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중기청) 무역단계별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컨설팅으로 확대**

* 수출컨설팅과 FTA컨설팅을 통합하여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세일즈, 계약, 생산, 통관(FTA원산지), 물류, 결제, 사후관리 등 무역전반에 대한 Total 컨설팅 제공

□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컨설팅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

○ **(기업 수용성 및 선택권 제고)** 업종별 우수 사례, 컨설팅 진행 방식을 기업에 사전에 제공하고 **기업현황도 사전 진단**

- 기관간 컨설턴트 풀을 공유하고, 컨선턴트 풀을 기업에게 사전 제공,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컨설팅 효과를 제고

○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 수행기관 합동으로 **컨설턴트 전문화 교육실시**

-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교육단계에서부터** 원산지, 업종별, 품목별 등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

* (관세청)정보원 주관 "FTA컨설팅 양성과정", (중기청·종합센터)자체교육

○ **(성과중심 평가체계 개편) 컨설턴트** 평가시 **만족도 조사** 등 질적 지표를 반영하고, **컨설팅 수혜 기업**의 **FTA 수출 성장실적을 평가**

- 평가결과 **우수 수진 기업은 해외수출 및 수출금융 프로그램 등에 추천**하고, 우수 컨설턴트는 인센티브(가산금 등)를 부여

○ **(기업의 참여의식 제고) 기업**의 **참여의식**과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비용 일부**를 기업이 **자부담**하도록 하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무료 컨설팅 서비스 계속 제공**

* (현행) 관세청(0~30%, 매출액 기준), 중진공(30%), FTA 종합센터(무료)

【컨설팅 수행단계별 개선방안】

사전준비	▸FTA 활용정보·컨설팅 모범사례 제공 ▸컨설턴트 정보 제공 및 기업현황 사전진단
⇩	
컨설팅 수행	▸수행기관간 협의체 구성/기관별·컨설턴트별 특화 ▸현장맞춤형 컨설팅/대상기업에 컨설턴트 선택권 부여
⇩	
평가	▸컨설팅 성과 중심으로 평가 ▸우수 수진기업·컨설턴트 인센티브 부여
⇩	
사후관리	▸수진기업별 전담 컨설턴트 지정·관리 ▸사후 컨설팅 서비스 제공

3 실행단계 기업

◇ FTA 활용 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원

◇ 현지공관내 FTA 활용지원반을 두어 현지 통관애로를 즉시해결

◇ 사후 검증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검증 신고센터를 두어 사후검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

1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FTA체결국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FTA 체결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장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현지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 **FTA 체결국별 진출유망품목, 시장분석 자료 발간**(KOTRA, 무역협회)

* 유럽 유통시장 진출가이드(9월), 한-터키 FTA 활용방안(9월), 한-콜롬비아 FTA 활용 실무매뉴얼·한-캐나다 FTA 수출유망품목(하반기) 등

○ 현지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FTA 헬프데스크**(KOTRA)를 확대*하고 **자동차부품**(FTA주수혜품목)**의 현지수출 지원센터**(KAPP)를 확대**

* FTA 헬프데스크: ('12년) 뉴욕, LA → ('13년) EU, 터키, 인도, 콜롬비아 신설
** KAPP(Korea Autoparts Park): ('12년) 11개사(美 디트로이트, EU 프랑크푸르트) → ('13년) 19개사, 인도 등 신규 개소 검토

□ **(FTA 수혜품목 직접마케팅 확대)** 관세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 섬유 등 주요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산업별 수출직결 마케팅** 실시

◇ (산업부, KOTRA) FTA체결국 대상 무역사절단 99회(미국 14회, EU 23회, 기타 62회),해외전시회 총 58회(미국 20회, EU 20회, 기타 18회) 개최

◇ (중기청) FTA 전략품목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12년 87회 → '13년 100회)

○ **(자동차부품)** FTA 체결국 소재 완성차 업체와 국내 부품 업체와의 맞춤형 연계사업인 **'한국 자동차부품 전시상담회**(KAP)**'** 확대

* (KAP): ('12년) 6회, 104개사 → ('13년) VW, 벤츠, TATA 등 8회 140개사

○ **(섬유패션)** 美·EU 현지에서의 전문전시회 개최

* Korea Preview in Newyork(7월, 美), Korea Preview in Milano(9월, EU)

○ **(생활소비재)** 글로벌 유통망 및 주요 벤더 공략

* 유럽 대형 유통망 상담회(6월, 서울), 북미 대형유통망상담회(9월, 서울), TESCO 한국상품전(11월, 英, 입점품목군 49개 → 100개로 확대)

○ **(농수산식품)** FTA 관세인하폭이 큰 품목*(음료, 라면, 김치, 김 등)을 농수산식품 FTA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K-POP・韓流・한식 세계화 등을 활용하여 현지마케팅 강화(농식품부, 해수부, aT센터)

* 한류 연계 K-FOOD FAIR 개최 : 중국(6월), 베트남(9월), 미국(10월), 홍콩(11월) 등 4회

* (농산물) 국제 종합박람회 31회, EU지역 주요품목 판촉행사 15회 등 해외 판촉 179회 등

* (수산물) 10대 전략품목(김, 넙치, 전복 등) 수출확대를 위해 FTA 원산지 통합컨설팅을 지원하고,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와 연계·바이어 초청 상담회('13.11월) 등 개최

□ **(新 FTA 체결국 진출 지원)** 터키, 콜롬비아 등 최근 FTA 체결국에 대해 FTA **혜택에 대한 현지 홍보 및** 공격적 마케팅 추진

* (터키) 상품교역·문화교류·FTA 세미나 등이 복합된 이스탄불 세계일류 한국상품전(8.31~9.3) 개최 및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10회)

* (콜롬비아) FTA 발효 대비 시장 선점을 위해 무역사절단, FTA 설명회 등 사전 마케팅 적극 추진(13년 무역사절단 5회, FTA 설명회 1회 등)

□ **(FTA 선도기업 육성 확대)** 한・미 FTA 선도기업 육성 외에 한・EU/한・터키 FTA 선도기업 추가 육성('13년 58개사→**'14년 100개사**)

* FTA 체결국별 FTA 수출유망기업 선정, 무역관을 통한 수출 全과정 밀착지원으로 성과 조기 창출 및 FTA 활용 롤모델 창출

□ **(FTA 新시장기회 확보 지원)** FTA로 창출된 新시장기회를 활용, 중장기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조달, 문화컨텐츠 진출지원을 강화

○ **(정부조달)** 시장별 차별화된 진출 지원을 통해 **FTA로 낮아진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실제 비즈지스 기회로 효율적 활용**

* (미・EU) 美육군 조달전시회(10월, 워싱턴), 조달수출상담회(美 6월, EU 11월), 조달선도기업('12년 美 10개사→'13년 美·EU 30개사), 해외조달지원센터(7개→ 10개) 등

○ **(문화컨텐츠)** 한류를 적극 활용,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로 넓어진 유럽 문화콘텐츠 및 서비스 산업 해외마케팅사업 확대

* 아시아-EU Cartoon Connection(3월, 서울, 애니메이션), Korea Service & Content Market (6월, 서울, 컨텐츠),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11월, 영국, 문화서비스) 등

□ **(기존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FTA 활용지원사업간 연계 체계 마련)** 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FTA수출초보기업, FTA수출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유관 기관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프로그램에 연계**

* FTA 컨설팅·교육 수행 기관이 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수요와 역량을 감안하여 수출지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추천

○ **(1단계)** 수출 스타트업(무역협회), 수출첫걸음(KOTRA) 등에 FTA활용 초보기업을 추천하고 일정부분(예:10%)內에서 동기업 우선 선정('13년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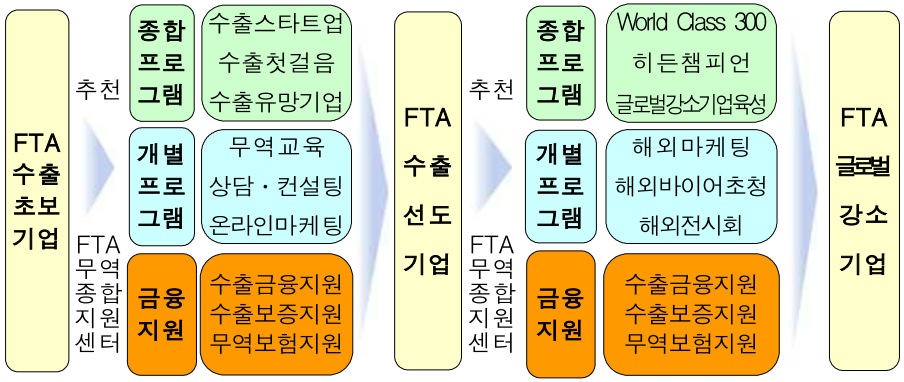
* 例)수출스타트업('13년 300개사 中 30개사), 수출첫걸음('14년 500개사 中 50개사)

* (**FTA수출초보기업**) **종합프로그램** 수요 기업은 수출스타트업(무역협회, '13년 300개사), 수출첫걸음(KOTRA, '13년 500개사),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13년 1000개사) 사업에 추천하고 **개별프로그램** 수요 기업은 무역교육, 온라인마케팅 프로그램 등에 맞춤형 추천

○ **(2단계)** FTA 수출선도기업을 선정해 World Class 300(중기청), 히든챔피언(수은), 글로벌강소기업육성(중진공) 등과 단계별로 연계('15년)

* (**FTA수출선도기업**) **종합프로그램** 수요 기업은 World Class 300(중기청, '13년 33개사), 히든챔피언(수은, '13년 50개사), 글로벌강소기업육성(중진공, '13년 100개사) 사업 등에, **개별프로그램** 수요 기업은 해외마케팅, 해외전시회 프로그램 등에 맞춤형 추천

【FTA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



2 통관애로 해소

□ **(FTA 해외 활용지원반 활성화)** 해외 현지 통관애로, 기타 FTA 활용애로 해소를 현지에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설치된 **「FTA 해외활용 지원반」 활성화**

○ 재외공관內 통상담당, 관세관, KOTRA 무역관 등으로 구성

- 관세관을 중심으로 상대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FTA 통관애로에 대한 해결을 지원**

○ **현지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상대국 FTA 이행상황 평가 및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파악**(반기1회)**하여 이행협상 등에 반영**

* FTA 해외활용지원반(보고서 작성, 반기 1회) →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FTA 활용애로 취합) → 산업부 통상교섭실(이행협의 및 개별 협상 등에 반영)

□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협력 강화)** FTA 양국 세관당국이 상대국 기업에게 FTA 통관절차에 대해 상호 설명회 개최 (관세청)

* 상대국 세관당국이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FTA 활용 및 통관 정보를 번역하여 우리기업에게 신속히 제공

3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 **(사전준비 단계)** 사후검증 관련 정보제공 및 자가검증툴 보급 등을 통해 **기업이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보제공)** 사후검증 대응 **업종별 메뉴얼 제작·보급*, 기관합동 지역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에게 사후검증 정보 제공

* 한·미 FTA 사후검증에 대비해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화학, 농산물 등 5대 주요 업종에 대해 업종별 대응메뉴얼 보급('13.3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중기청, 관세청, 지자체,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산단공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제1차 설명회: '13.5월, 6회/제2차 설명회: '13년 하반기 예정)

○ **(자가검증툴 보급)** 기업이 자사의 FTA검증역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툴 개발·보급('13. 8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고위험 산업군 집중 관리)** 사후검증 예상업종을 중심으로 사전진단 컨설팅('13. 6월~, FTA 종합지원센터), 실무교육('13.11월, 관세청) 실시

* 섬유, 자동차 부품, 가정용 전자제품,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산업 등

□ **(검증진행 단계) "FTA사후검증지원센터**(FTA무역종합지원센터內, '13. 5월 개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사후검증 대응 신속 지원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內 **'사후검증 접수창구'를 개설**('13. 5월~)하여 **사후검증 진행기업에 대해 신속히 상담 및 지원**

* 사후검증 소명자료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절차 안내 및 자료 작성 지원

○ **관세청 고객센터 內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 설치·운영**

□ **(재발 방지) 원산지검증 종료 시** 당해 기업의 개선요구 사항 등 전반적인 검증대응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관세청)

4 인증수출자 갱신 간소화(관세청)

□ **(인증갱신 지원)** 인증수출자 갱신 도래 업체 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前**까지 갱신 **신청절차 및 준비사항** 등 **안내**

*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의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만이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 '13. 4월 현재 6천여개 기업

* 인증 갱신 수요(매 2~3년 주기) : ('13) 2,834개, ('14) 3,821개

○ **갱신기한 前** 인증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해** 갱신심사 간소화

* 기업이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 →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인증을 갱신

□ **(사후관리 강화)** 자율점검 未참여기업 등 **원산지 충족이 어려운 위험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점검**

○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이 소관분야별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종합대책 세부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후속조치 점검결과는 **「FTA 활용촉진협의회(산업부 1차관주재)」에 보고**

□ 향후 **FTA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조달시장 진출, FTA를 활용한 서비스업 진출 및 국내 서비스시장 선진화, FTA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과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